NATION 7世景正安

2022. 학교은영위원회》 연수자로

전우전북초등학교





1 청탁금지법의 적용

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

2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

5 주요 분야별 심의사항

3 운영위원의 역할, 권한과 의무











1. 청탁금지법의 적용







적용대상자



- ◎ 공무수행사인 ⇒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
- ◈ 학교(유치원)운영위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됨

Q

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?

Answer **YES**

- ✓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와 <u>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</u>
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
 에 의해 <u>공무수행사인</u>에 해당
- ✔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,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고,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

적용되지 않음



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 **승의 날에 교장, 교감선생님께 5만원**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?



✔ 학생들의 성적, 수행평가,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 을 관장하는 교장,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 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업무수행, 사교•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 도 허용되지 않음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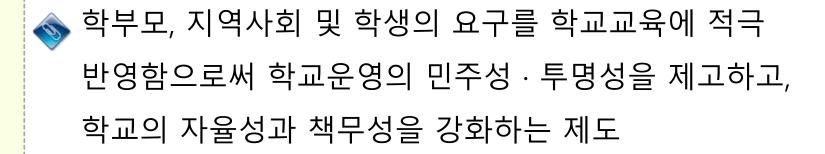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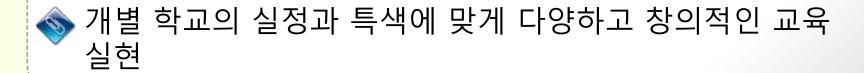


개념



🔊 모든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설치







법적 성격

- 〉〉법정 위원회
- >>> 독립기구
- >> 심의·자문기구

초 •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집행기관인 학교장 과 독립된 기구

국·공립학교 → 실의키쿠 사립학교 → 자문기쿠

법령 구조

▼ 학교발전기금: 국・공・사립 모두 심의・의결

〉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~ 제34조의2

운영위원회 설치, 결격사유, 기능, 구성・운영, 연수 등

★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~ 제64조

구성, 선출 방법, 회의록 작성 및 공개, 소위원회, 조례 등에의 위임, 학교발전기금 등

>>>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정관

학교 운영위원의 선출, 임기, 자격, 의무, 운영 방법, 소위원회 설치 등

>>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운영위원의 정수,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·절차, 기타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

위인 구성 및 비율]

☆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(조례 제5조 제3항)

	걘	한부모위원	ઢ고원위원	지역위원
	자격요건	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	당해 학교에 재직 하고 있는 교원	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
비	일반학교	40 ~ 50%	30 ~ 40%	10 ~ 30%
율	맞춤형고 및 특성화고	30 ~ 40%	20 ~ 30%	30 ~ 50%
선출 기한		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 (3월 21일)		임기 끝나는 날 이전 (3월 31일)
임기		2년, <u>*한 차례 연임</u>		2년, <u>**한 차례 중임</u>



▶ 위원의 임기는 ₄월 ュ일에 시작

- * 한 차례만 연임: 1기 임기 후 2기 선출을 통해 연임 가능. 같은 학교 에서 3기를 쉬어야 4기에 선출 가능.
- ** 한 차례만 중임 :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. 16년 6월 17일 이전에 선출된 경력은 산입되지 않음



위원 자격

✓ 『국가공무원법』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
○ 되 수 업으 ★ 주도고으면 궤 조 이 >

이 될 수 없음(초•중등교육법 제31조의2)

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(결격사유)

- ▶ 피성년후견인 ▶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▶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▶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▶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▶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▶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▶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▶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・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 ▶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▶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

위인 정수

학 생 수	위 원 수	위 원 수 (유치원+초등 통합운영)
200명 미만	5 ~ 8명	7 ~ 10명
200명 이상 1천명 미만	9 ~ 12명	11 ~ 14명
1천명 이상	13 ~ 15명	15 ~ 17명



선출 방법

>>> 학부모위원



✓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음

>>> 교원위원

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

>>> 지역위원

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

》위원장·부위원장

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



기능

심의 자문 사항(초·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조례)



- 》교육과정 운영 관련
- 间 학교교육과정 운영
-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
- ◉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- 학교운동부 구성・운영
- ◉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-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》 학교행정 관련

- 학교 예산 및 결산
- ◉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헌장 및 학칙 제・개정
- 🔳 공모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(사립은 제외)
- 🔳 초빙 교원의 추천(사립은 제외)
- 학부모부담 경비 관련
- 교복・체육복・졸업앨범,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- ◉ 학교발전기금 조성・운용 및 사용
- 학교급식





3. 운영위원의 역할,

권한과 의무





위원의 역할





회의소집,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

>>> 부위원장



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

>>> 운영위원



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



- 소위원회 안건심의의 전문성,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조사, 자료수집 등의 기능 수행 (학교급식소위원회, 예·결산소위원회)

★ 소위원회 회의 내용으로 본회의 내용이나 결정사항을 대신할 수 없음



[위원의 권한]



- >> 학교운영 참여권
- ■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(유치원)운영에 <mark>참여</mark>
- ■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·건의

>> 심의·자문퀀

- ■유아교육법, 초 · 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중요사항 심의 · 자문
- ■학교(유치원)운영 중요사항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

>>> 보고 요구권

- ■다음과 같은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
- ✓ 심의・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거치지 않고 시행
- ✓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음
- ✓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



위원의 의무



- 》회의 참여 의무
- 间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
- ✓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시의결로써 퇴직 결정

- >> 지위남용 금지 의무
- ■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(유치원)와의 거래 등에 재산상 권리・이익 취득 및 알선 행위 금지
- 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음
 - ▼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 상실





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

፟■제한 대상

▶ 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, 부모, 자녀, 제3자 알선도 포함

■제한되는 거래의 범위

- ▶지위를 남용한 재산의 거래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, 권리취득도 포함
- ▶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나 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예산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등이 제한되는 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

■지위남용의 판단 기준 예시

- ▶위원(알선 포함)의 이익을 위해 계약 법령 위반
- ▶위원 본인 거래나 알선과 관련해 위원이 사업 제안
- ▶위원과 관련한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, 유리한 거래 진행



- ■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
- ◉운영위원 간 상호 이해 (교육공동체 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사만 관철시키려고 하기에 앞서 다른 위원들의 입장도 고려)
-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
- ■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 준수
 - ◉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함



학교와 소통, 건전한 견제





4. 학교운영위원회





회의의 종류

>> 시기에 의한 분류

>>> 형태에 의한 분류

- 정기회 :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일에 개최하는 회의
- ■일시회: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

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

- 본회의: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 임원선출,안건심의자문,규정개정등주요안건의처리
- 소위원회: 안건심사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 사전조사 및 검토 등 수행

[필수소위원회:예·결산 및 학교급식소위원회]

- →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 안건 심의
- 본회의와 소위원회와의 관계
 - * 소위원회에 본회의 권한 위임 불가
 - ★ 소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본회의 대체 불가



회의진행 원칙]

다수결의 원칙

- 안건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
- 가부동수는 부결이 원칙

▶ 정족수의 원칙

- 회의의 효력 발생 또는 안건의 가부결정에 필요한 위원 수
- **의사정족수** : 유효한 회의에 필요한 최소 위원 수
- **의결정족수** : 안건결정에 필요한 정족수



 한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음.

회의공개의 원칙

-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원칙
- 회의 진행뿐만 아니라 사전 회의 개최 안내까지 포함
- 참관인은 허가 없이 회의석상에서 발언 불가



심의 전

심의

심의후

- 심의 안건 준비
 - ex

예산안, 교육과정계획, 수학여행 계획 등

- 의견 수렴
 - ex

학생·학부모·교원 등 의견 수렴 [학생] 설문조사, 대의원회 등 [학부모] 학교홈페이지, 학부모 총회, 가정통신문 등

- 학교운영위원회 심의
- 학생 참여 확대
 - ex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 심의(학생대표연1회 이상 참석)

<u>근거 :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</u> 제59조의4 제2항

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위원회 구성·운영

-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· 시행
- 학교장은 결정 결과공개 및 보고









절반이 넘은 수 (2분의 1을 넘어야 함)

조례 제₁₃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・의결에 참여 불가



회의 규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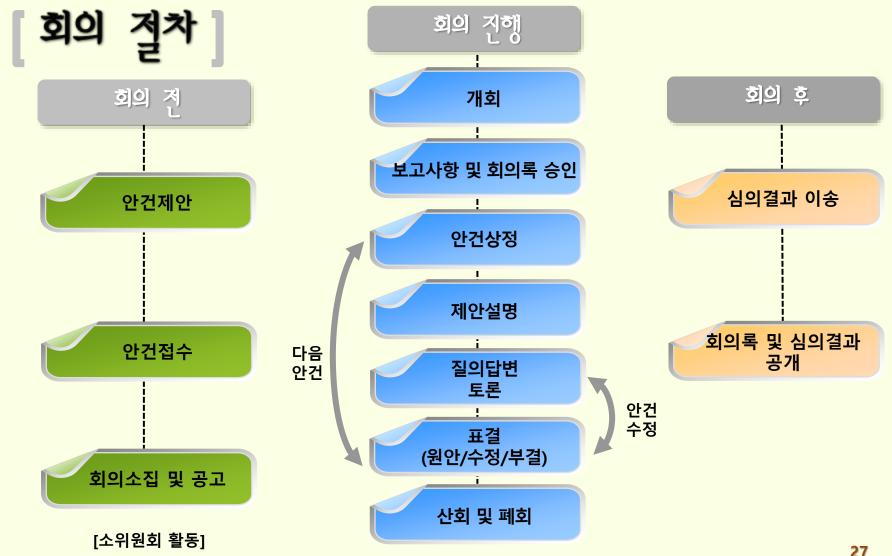


민주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체 회의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면 좋음

>> 주요 내용

- 안건부의, 위원의 발언 기준(방법, 횟수, 시간 등)
- ◉ 표결방법, 표결결과 정리
- ◉회의록 작성 및 공개
- ■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◉회의 중의 질서유지 및 준수 사항 등







회의 전

안건제안

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 발의

- ★ 참고: 의견수렴
 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,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
 - 학생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등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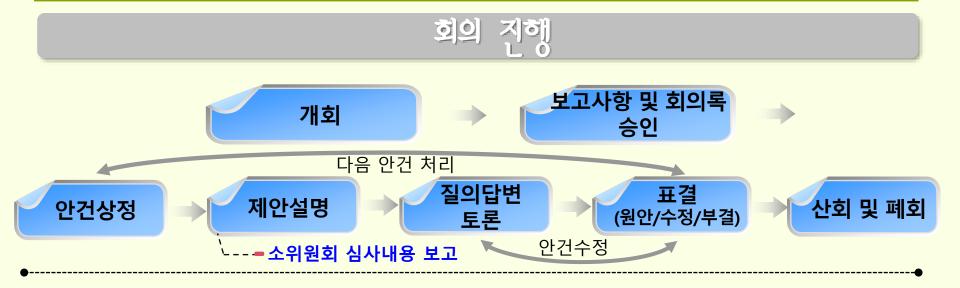
안건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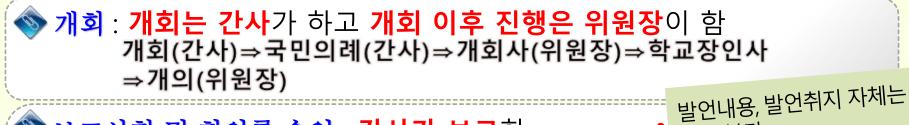
- ★ 참고: 의안의 철회
- 안건의 제안자라면 누구나 철회 가능
-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철회 가능
- 소위원회 회의 또는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라면 동의없이 철회 가능
- 회의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 경우 소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 가능

회의소집 및 공고

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이 회의소집 공고 (위원들에게 개별통지,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)







- ♥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: 간사가 보고함
 - -보고사항: 위원 및 교직원 변동 사항, 전(前) 회의 심의 사항 및 처리 결과, 금번 회의 안건 현황 등
 - -보고사항 종료 후 전(前) 회의 회의록을 승인 받음(오기, 누락 사항 검토 및 수정) 위원장이 승인, 승인된 회의록에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

수정 불가



- ◆ 안건상정 :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회부, 한 번에 하나씩 상정
 - -필요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음.
 - -그러나 표결은 한 건씩 독립되어 처리해야 함.

- **◈ 제안설명** : 안건을 제안한 자가 안건 취지, 주요골자 등 설명
 - -학교장이 제안한 안건은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설명 가능
 - -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이 심사보고
- ◇질의·답변: 현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로만 한정
 - -질의나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함
 - -질의(발언) 횟수나 시간은 위원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

♥ 토론 : 가급적 반대-찬성-반대-찬성의 순으로 교대로 하는 것이 좋음



-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: 표결방법은 위원장이 정하되, 위원들과 협의 -거수투표, 기립투표, 무기명투표, 기명투표
 - -가부동수는 부결로 봄



- 🚇 표결 시 지켜야 할 원칙
 - 垂결정정 급치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・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어떠한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정정할 수 없음
 - ■조건부 표결 금지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음
- 🚇 의결의 종류
 - 원안가결: 위원 또는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수정을 가하지 않고 가결
 - 수정가결: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
 - 부 결: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하는 위원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





- 🚇 수정(안)에 대한 표결방법
 - 여러 가지 수정(안)이 있는 경우 최종 수정(안)부터 표결
 - 🔳 최종 수정(안)이 부결될 경우 내림차순(셋째, 둘째, 첫째)으로 수정(안) 표결
 - ◉ 첫 번째 수정(안)도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 실시

[예시] 졸업앨범 사양 A(원안), B(첫 번째 수정안), C(두 번째 수정안), D(세 번째 수정안)



32





◈ 산회 : 위원장이 당일 회의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포 -회기가 2일 이상인 경우 산회 전 다음 회의일시 통보



🥎 폐회 : 회기의 종료를 선포 -회기가 1일인 경우 산회선포에 이어 바로 폐회선포





회의 후

심의결과 이송



회의록 및 심의결과 공개



- **鉩 회의결과 이송** : 위원장⇒학교장
 - -수정가결일 경우 수정부분을 반영하여 완전한 하나의 의안으로 이송
 - -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이송

비공개 회의록이더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할 경우 공개



- 🥸 회의록 및 심의결과 공개 : 학교 홈페이치 등에 공개 (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)
 - -회의록 공개 시 발언내용을 익명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명 익명 처리
 - -홈페이지가 없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
 - -개인정보보호, 교권보호 등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가능
 - ★ 회의록 공개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









[연간 활동계획(예시)]

월 별	활 동 계 획
	ㅇ학교급식 운영 계획안 심의
1월	o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사항 협의
	ㅇ기타 각종규정 정비(포상 등)
	ㅇ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정비(학생 수 변동에 따른 위원정수 등)
	o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
	ㅇ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
2월	ㅇ학교회계 예산안 심의
	ㅇ학교운영지원비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
	ㅇ수학여행, 학생수련계획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
	o 교복, 체육복 선정 및 앨범 <u>제좌안</u> 심의(신설학교)
	o 학교헌장 및 <u>학칙제개정안</u> 심의(사립: 법인 요청 시)
	ㅇ홍보활동(운영경과 및 실적,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등)
	o <u>방과후</u>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
3월	o1학기 주요 교육사업 협의
0월	ㅇ학교회계 <u>결산안</u> 심의(학교실정에 따라 4월 이후에 심의 가능)
	ㅇ학교발전기금 결산 및 집행결과 보고
	ㅇ봉사활동, 동아리 활 동 운영계획안 심의
	∘학교운동부 구성·운영 계획안 심의
	o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사항보고서 작성 및 홍보
	ㅇ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
	ㅇ수학여행계획안 심의
	ㅇ자매학교 교류 계획안 심의
4월	ㅇ교복 및 체육복 선정(구매계획)안 심의(하복)
	○ <u>앨범제작안</u> 심의
	ㅇ(춘계)현장학습 및 수련회계획안 심의
	o 추가경정예산안 심의
	※ 운영위원 연수실시 — 학교운영위원회 전반사항

	월 별	활 동 계 획
1	5월	o대입 특별전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심의 o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 o 2학기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<u>선정안</u> 심의 ※ 운영위원 연수실시 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	6월	ㅇ학교 현안 사업 협의 ㅇ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 ㅇ하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
	7월	ㅇ교장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(사립 제외) ㅇ추가경정예산안 심의
	원	o 가을 체육대회 운영계획안 심의 o 학교예술제 계획안 심의 o 2학기 주요 교육사업 협의
	9월	ㅇ각종 교육자료 <u>선정안</u> 심의 ㅇ(추계)현장학습 계획안 심의
	10월	ㅇ교복 및 체육복 선정(구매계획)안 심의(<u>임년도</u>) ㅇ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
	11월	ㅇ추가경정예산안 심의 ㅇ대입 <u>특별전형중</u>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심의
	12월	 동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(사립 제외) 의년도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안 심의 ※ 운영위원 연수실시 - 예산의 편성 및 심의 관한 사항



예 • 결산]



- ■예산: 1년간 단위학교 수입・지출의 예정표 (학교 교육계획을 금액으로 표시)
- **결산**: 1년간 단위학교 수입 지출의 집행실적

- >>> 고려사항
- ◉교육과정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 우선 편성
- ■학교교육계획과 예산의 연계, 학교 현안사업 반영
- ◉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따른 편성
- ◉학부모부담경비의 적정성
- ◉예산낭비 여부, 불용액 과다 여부



학교교육과정



- 🖲 당해 학교의 교육 설계도, 상세한 교육운영 세부 실천 계획
- 교원, 교육과정 전문가,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에서 교육과정 편성 자문
- ◉ 초등: 다음 학년도에 배우게 될 교육과정 편성 및 시수 배당
- ■중등: 다음 학년도 신입생이 3년간 배우게 될 교육과정 편성 및 시수 배당

- >>> 고려사항
- ■교과별 시수 배당의 적정성
- ◉창의적 체험활동 및 선택과목 편성
- ■가부의 결정보다는 바람직한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심의・자문에 중점



교과용 도서



- ◉교과서 + 교사용 지도서
- ■국정, 검정, 인정의 절차를 거쳐 인정받는 자료
- ■교과협의회, 학년협의회 및 교사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

- >> 고려사항
- ◉교과용 도서 추천 및 선정의 공정성, 투명성
- ■학생들의 눈높이 고려, 교과과정의 충실한 정도
- ◉교과용 도서의 구성, 내용, 사용 편의성 검토



현장체험학습



>>> 개념

- ■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교육내용 이해 증진,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
- ■종류: 수학여행, 수련활동, 숙박형 현장체험학습, 1일형 현장체험학습

>> 고려사항

- ◉학생, 학부모의 의견 충분히 반영
- ◉ 여행지, 숙박업소, 차량업체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
- ■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프로그램 선정, 안전성 면밀히 심의
- ■불참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마련 여부



방과후학교



- ■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
-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기회 제공
- ◉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 원칙

- >>> 고려사항
- ■프로그램 수강이 강제되지 않아야 함
- 강좌개설, 운영시간, 강사선정, 강사료, 학생 부담액 등 전반적 내용 타당성 반영 확인
- ■자기주도학습 향상, 인성・창의력・특기적성 계발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
- ■학생 안전대책 확인



학교급식]



>>> 개념

■학교장 직영 급식이 원칙이며,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으나, 식재료 선정·구매·검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않음

>> 고려사항

- 학생, 학부모의 기호를 고려한 급식운영, 안전한 급식제공 중심
- ■학교급식법 등에서 정한 영양, 위생, 식재료, 식생활지도 기준 반영
- ◉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 면밀히 심의
- ■급식 단가의 적정성 검토(급식시설비는 학교 부담)
- ■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설치



학교발전기금



- ■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**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**가 되어 개인,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
-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고 기탁 목적에 맞게 사용 (학교교육시설,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, 체육・학예활동,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)

- >> 고려사항
- 일정금액 할당 및 모금의 직·간접적 강요 불가
- ■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: 발전기금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・지출 계획 포함
- 학교발전기금 결산 시 기탁자의 지정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